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51369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난

담당변호사 공락준, 이지형, 최대원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8. 4. 19. 주식회사 E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9. 2. 28.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24547호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6,148,428원과 그 중 4,723,765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 14. 확정되었다.

나. D는 2018. 6. 25. F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9. 12. 16. F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15691호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3. 5.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2,608,821원과 그 중 1,923,366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3.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의 모친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9.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H, I, D가 있었는데, 위 4인의 상속인들은 2019.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19.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인 2018. 4. 19. 또는 2018. 6. 25.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시점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후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4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언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고, D는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D나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서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고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법정 요건과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1/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아파트 [] 동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

철근콘크리트조경사스라브지붕 28층 아파트

1층 668.30㎡, 2층 내지 5층 각 655.98㎡, 6층 내지 19층 각 643.08㎡, 20층 583.32㎡, 21층, 22층 각 523.56㎡, 23층 내지 25층 각 435.11㎡, 26층 내지 28층 각 148.22㎡, 지하1층 1820.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 대 10774.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8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7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774.9분의 18.59 끝.

